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50호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제2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5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안전전문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5.	부산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대표자	한문희	이병진 (2023년 9월 26일자부터)
2012.11.22.	부산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 전기차량)	대표자	한문희	이병진 (2023년 9월 26일자부터)
2011.1.2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 전기차량)	기관명	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 교
2020.11.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 교통관제 교육훈련기관	기관명	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 교

끝.